

수원지방법원 2022. 10. 5 선고 2021나9451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다290594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2. 10. 5 선고 2021나9451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

변론종결 2022. 9. 7.

판결선고 2022. 10. 5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8. 18. 선고 2021가소9060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2. 2.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6. 21.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건물 증축공사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공사금액 180,000,000원에 도급주었고(이하 ‘이 사건 도급계약’이라 한다), 피고는 2017. 12.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7. 12. 3. 피고에게 10,00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금원’이라 한다)을 송금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9. 3. 29.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342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, 추가공사대금,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(이하 ‘관련 소송’이라 한다)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9. 19. ‘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43,000,000원, 추가공사대금 11,000,000원, 대여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원고가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. 7. 23.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, 대법원 2020다2596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. 11. 12. 상고가 각하되어 같은 날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7. 12. 3. 피고에게 증액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금원 10,000,000원을 지급하였으나, 관련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, 오히려 피고가 수행하지도 않은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, 결국 위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11,000,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

부당이득으로서 위 1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반환요구자인 원고에게 있는바(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),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가 2017. 12. 3.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10,000,000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,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(원고도 이 사건 금원은 증액된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), ② 원고 주장과 같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금원이 인정된 기지급 공사대금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(관련 소송에서는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합계 55,000,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바, 이 사건 금원 10,000,000원도 위 55,000,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), 설령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, ③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추가공사대금 11,000,000원이 잘못 인정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,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어 인정되기 어려운 점, ④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외에 피고에게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이 중복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1,000,000원을 수익하였고, 이로 인해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

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염기창, 판사 김문성, 판사 정승화